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44 발의연월일: 2025. 2. 6.

발 의 자:김승원·안태준·조계원

전현희 • 박지원 • 정청래

박해철 • 이건태 • 김원이

장경태 · 이성윤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피의사실공표죄는 1953년 제정형법에 처음 도입되었음에도 도입당 시부터 현재까지 기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문이 라 평가받고 있음.

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 민의 알권리,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 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.

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, 피의자,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, 피의사실이 공개된 경우 피의자가 법원에 공개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

여 공소제기 되기 전 불필요한 피의사실공표등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자 함(안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편제15장에 제185조의2 및 제18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5조의2(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) ① 검찰,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 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, 유포, 누설한 경우에 피의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에 이미 공표, 유포, 누설된 피의사실의 삭제 및 피의사실공표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.
 - ② 전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③ 법원은 전항의 청구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.
 -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85조의3(동전) ① 법원은 전조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피의사실공 표등금지를 명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1. 공개되는 내용이 일반적 절차적 사실에 한정되어 재판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

- 2. 범인 검거 및 범죄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
- ②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등금지를 명할 수 있다.
-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이 있기 전이라도 이미 공표, 유포, 누설된 피의사실의 삭제 및 피의사실 공표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.
- ④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185조의2(피의사실공표등금지
	명령) ① 검찰, 경찰 그 밖에
	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
	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
	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
	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
	표, 유포, 누설한 경우에 피의
	자는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
	원에 이미 공표, 유포, 누설된
	피의사실의 삭제 및 피의사실
	공표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
	<u>다.</u>
	② 전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관
	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	③ 법원은 전항의 청구를 받으
	면 10일 이내에 심문기일을 지
	정하고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
	<u>한다.</u>
	④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의견
	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
	을 제출하여야 한다.
<u> </u>	제185조의3(동전) ① 법원은 전조
	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피의사

실공표등금지를 명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야 한다.

- 1. 공개되는 내용이 일반적 절 차적 사실에 한정되어 재판의 실체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지 여부
- 2. 범인 검거 및 범죄피해 확산방지를 위하여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이되는지 여부
- ② 법원은 피의자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피의사실공표등 금지를 명할 수 있다.
-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 령이 있기 전이라도 이미 공표, 유포, 누설된 피의사실의 삭제 및 피의사실공표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.
- ④ 피의사실공표등금지명령의 방법과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